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7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디자인권 회복신청 시 ‘실시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디자인권 회복을 위한 필요서류 폐지(안 제64조제2항)
 - 소멸한 디자인권의 회복을 위해 ‘실시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권리 회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5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
신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766, Fax: (042)472-7470
이메일: lims21c@korea.kr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를 “적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① (생략)</p> <p>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의 회복을 신청하려는 디자인권자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납부서에 그 취지를 <u>적고</u>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첨부하여</u>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p> <p>1. <u>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에 그 등록디자인이 실시 중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u></p> <p>2. <u>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u></p>	<p>제6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적어 ----- ----- ----- .</p> <p><u>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삭 제></p>